



2013년 4월 5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기술규제서비스과 정기원 과장, 김용득 연구사(509-7255)

## ‘외국의 강제 시험인증(TBT) 문제, 해결사례 늘어

- 인도, 인도네시아 안전인증 시행연기 등 기술규제 애로 해소 -

**① [인도] 2013년 4월부터 시행하려던 TV, 모니터, 셋톱박스, 컴퓨터, 전자레인지 등 15개 전자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를 2013년 7월로 연기되어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**

- (애로 사항) 인도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은 부족하고 인증을 받으려는 우리 제품은 많다보니, 우리 기업들이 시행일까지 수출제품의 시험을 마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음
- (대응 활동) 올해 초 서면으로 시행연기를 요청하고 2월에는 해당 부처를 방문, 3월에는 WTO TBT 위원회에서 이의제기 및 협의 추진
- (대응 결과) 2013년 7월까지 시행을 연기하고 10월까지 경과 조치를 설정한다고 발표하여 시급한 애로사항이 해소됨

**② [인니, 말련]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전기안전 규제가 인도네시아는 2013년 4월에서 2013년 11월로, 말레이시아는 2013년 1월에서 2014년 1월로 각각 연기되어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**

- (애로 사항) 새로운 규제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, 수출하는데 최소 6개월이 소요되나, 준비기간이 2개월에 불과
- (대응 활동) 해당 국가에 규제 시행을 6개월 이상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,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초에 해당 국가를 찾아가 협상 추진
- (대응 결과) 인도네시아는 2013년 11월부터, 말레이시아는 2014년 1월부터 규제를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와 애로사항이 해소됨

-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인도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의 전자제품 안전인증 시행이 연기되어 수출기업에게 부담이 되어 왔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.
- 규제 시행시기가 촉박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시험·인증을 받을 시간이 부족함을 호소하여, 정부는 해당 국가에 제도 시행 연기를 요청하였고,
- 이에 인도의 전자제품 안전인증은 2013년 4월에서 2013년 7월로 연기되고, 인도네시아는 2013년 4월에서 2013년 11월로, 말레이시아는 2013년 1월에서 2014년 1월로 각각 연기되었다.
- 인도는 지난해 10월에 TV, 모니터, 셋톱박스, 컴퓨터, 전자레인지 등 15개 전자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를 2013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세계무역기구(WTO)를 통해 알려왔으나,
- 인도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은 부족하고 인증을 받으려는 우리 제품은 많다보니, 우리 기업들이 시행일까지 수출제품의 시험을 마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.
- 기술표준원은 올해 초 서면으로 동 제도의 문제점과 시행연기를 요청하였고, 2월에는 인도 주재 상무관과 함께 해당 부처를 방문하였으며, 3월에는 WTO TBT 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동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, 인도측 대표단과 협상을 추진하였다.
- 인도는 2013년 7월까지 시행을 연기하고 10월까지 경과조치를 설정하여, 7월 이전에 시험을 마치고 인증을 신청한 경우 제도를 유예한다고 발표하여 수출기업의 발등의 불은 끈 상태이다.
- 이와 유사하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지난해 10월에 2013년부터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전기안전 규제를 시행한다고 통보하였다.

-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, 수출하려면 최소한 6개월이 걸리는데, 준비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상황이었다.
-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측에 규제 시행을 6개월 이상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,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초에 해당 국가를 찾아가 협상을 벌였다.
- 그 결과, 인도네시아는 2013년 11월부터, 말레이시아는 2014년 1월부터 규제를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와 기업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.

□ 기술표준원은 최근 개발도상국들까지도 시험·인증 등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,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시험·인증 애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.

- \* 무역기술장벽 (TBT, Technical barriers to trade):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벽이 되는 각국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, 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말함
- \* 무역에 영향이 있고, 2012년에 신규로 도입한 개도국의 기술규제는 1,242건으로 전체(1,550건)의 80%를 차지함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서비스과 김용득 연구사(☎ 02-509-725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# 참고 1

## 인도 전자제품 전기안전규제 개요 및 대응경과

### □ 인도 전자제품 안전규제 개요

#### 인도 전자제품 전기안전 규제

- ▶ 관련규정 :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(Requirements for Compulsory Registration) Order(2012)
- ▶ 관련부처 :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(MCIT) (department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)
- ▶ 목 적 : 전기 안전
- ▶ 대상제품 : TV, 컴퓨터, 프린터, 모니터, 노트북, 셋톱박스 등 15개 제품군
- ▶ 규제내용 : 국제표준(IEC)과 부합화된 인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, 라벨을 표시하고 BIS에 등록해야 하며, 2년마다 사후관리 실시
- ▶ 시행시기 : 2013년 4월 3일
- ▶ 수출현황 : 다수의 기업에서 88백만불 수출('11년)

### □ 규제내용 및 대응경과

- 통보일자 : 2012. 10. 19(G/TBT/N/IND/44)
  - \* 동 규제의 시행을 담은 고시를 '12년 9월에 관보 게재
- 아국 의견 회신 : 2013. 1. 25
- 인도 규제당국 방문 : 2013. 2. 20
- WTO TBT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 제기 : 2013. 3. 6
- 인도에서 규제시행연기를 발표 : 2013. 3. 20

## □ 안전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

| 순번 | 제 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 도 표 준           | 표 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전자게임기(비디오)                        | IS 616:2010       | Audio,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-Safety Require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랩 탑/노트북/태블릿PC                     | IS 13252:2010     |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-safety-General Require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PDP/LCD/LED TV<br>(32" 이상 화면 사이즈) | IS 616:2010       | Audio,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-Safety Require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200W이상의 증폭기에 장착된<br>광 디스크 플레이어    | IS 616:2010       | Audio,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-Safety Require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| 전자 레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IS 302-2-25:1994  |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: Part 2 Particular requirements: Section 25 Microwave ovens |
| 6  | 디스플레이, 비디오 모니터<br>(32" 이상 화면 사이즈) | IS 13252:2010     |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-safety-General Require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  | 프린터, 플로터                          | IS 13252:2010     |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-safety-General Require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  | 스캐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IS 13252:2010     |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-safety-General Require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  | 무선 키보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IS 13252:2010     |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-safety-General Require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 | 자동 응답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IS 13252:2010     |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-safety-General Require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 | 2000W이상의 증폭기<br>(amplifier)       | IS 616:2010       | Audio,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-Safety Require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 | 200W이상의<br>전자음향시스템                | IS 616:2010       | Audio,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-Safety Require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 | 주전원이 달린<br>전자시계                   | IS 302-2-26: 1994 |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: Part 2 Particular requirements: Section 26 Clocks          |
| 14 | 셋톱박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IS 13252:2010     | Audio,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-Safety Require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5 | 자동 자료 처리 기계(컴퓨터)                  | IS 13252:2010     |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-safety-General Require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□ 적용대상 품목별 수출규모(2011년)

| 품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HS CODE | 총 수출액<br>(천불) | 對발행국 수출액<br>(천불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자동처리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| 8471    | 3,312,017     | 30,470           |
| 휴대용 컴퓨터                        | 8471.30 | 1,255,520     | 14,425           |
| 컴퓨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471.41 | 21,904        | 172              |
| 입력장치/출력장치<br>(키보드, 스캐너, 프린터 등) | 8471.60 | 170,660       | 1,302            |
| 전자레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| 8516.50 | 84,029        | 557              |
| T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525    | 703,615       | 10,760           |
| 모니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528.41 | 8,760         | 2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528.49 | 3,130         | 370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528.51 | 1,723,506     | 7,466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528.59 | 195,342       | 6,003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계      | 1,930,738     | 13,841           |
| 셋톱박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528.71 | 582,783       | 33,051           |
| 비디오 게임용구                       | 9504.10 | 18,438        | -                |
|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6,631,620     | 88,679           |

## 참고 2

## 인도네시아 가전제품 전기안전규제 개요 및 대응경과

### □ 인도네시아 SNI 인증 개요

#### 인도네시아 에어컨, 냉장고, 세탁기 SNI 인증 개요

- ▶ 관련부처 : Directorate General of High Technology-Based Superior Industry, Ministry of Industry
- ▶ 목 적 : 에어컨, 냉장고, 세탁기에 대한 안전 확보
- ▶ 규제내용 : 에어컨, 냉장고, 세탁기의 안전에 대한 SNI 표준에 부합하고, 품질경영시스템(SNI ISO 9001) 이행
- ▶ 시행시기 : 2013. 4. 22
- ▶ 수출현황('11년 기준) : LG, 삼성 등 13개 회사 1.5천만불
  - \* 에어컨(1.6백만불), 냉장고(10.7백만불), 세탁기(3.1백만불)

### □ 규제개요 및 대응경과

- (규제 내용) 인도네시아에서 생산, 수입, 유통, 판매되는 에어컨, 세탁기, 냉장고는 SNI 표준에 부합해야 하고, 품질경영시스템을 이행하여야 함
- 통보일자 : 2012. 10. 22(G/TBT/N/IDN/66)
- 의견마감일 : 2012. 12. 20(통보 후 2개월)
- 채택예정일 : 2012. 11. 22
  - \* 채택예정일이 의견마감일보다 1개월 정도 빠름
- 시행예정일 : 2013. 4. 22(통보 후 6개월)
- 시행유예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연기를 요청 : 2012. 11
- 인도네시아 규제당국 방문 : 2013. 1
- 인도네시아에서 시행계획 회신 : 2013. 2

### 참고 3

## 말레이시아 에어컨 전기안전규제 개요 및 대응경과

### □ 말레이시아 에어컨 SIRIM 인증 개요

#### 말레이시아 에어컨 SIRIM 인증 개요

- ▶ 관련부처 : 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(SIRIM)
- ▶ 관련법령 : 전기공급법(1990), 전기규정(1994)
- ▶ 목 적 : 에어컨에 대한 전기안전 확보
- ▶ 규제내용 : IEC의 에어컨 안전표준에 부합 여부를 제3자인 SIRIM 인증을 받은 후 SIRIM 인증마크 부착
- ▶ 시행시기 : 2013. 1. 1
- ▶ 수출현황 : LG, 삼성 등에서 500만불 수출('12. 9 기준)

### □ 대응경과

- SIRIM에 에어컨 인증시행을 3개월 연기가 필요함을 설명하고, '13년 4월 이후에 시행할 것을 요청('12. 10)
- '12년 제3차 WTO TBT 위원회에서 양자회의 ('12. 11)
- 말레이시아 TBT 질의처(SIRIM)에 재차 회신을 요청('13. 1)
- 말레이시아 TBT 질의처에서 동 규제의 시행이 '1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통보('13. 1. 2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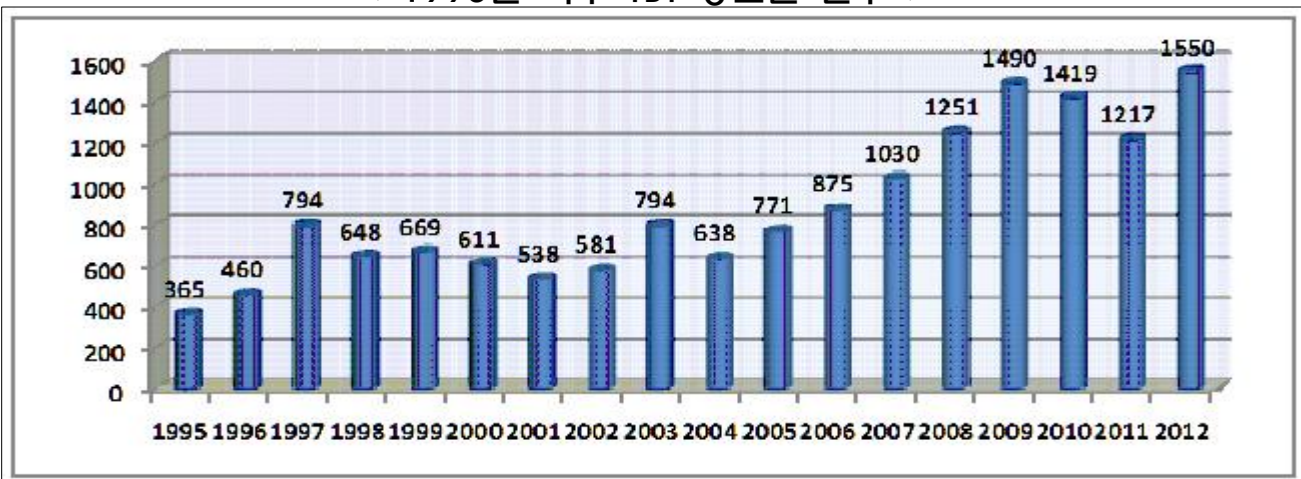


## 참고 4 무역기술장벽 통계

### □ WTO TBT 통보문 현황

| 연도<br>대응활동  | '95 | '96 | '97 | '98 | '99 | '00 | '01 | '02 | '03 | '04 | '05 | '06 | '07   | '08   | '09   | '10   | '11   | '12   |
|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TBT통보문      | 365 | 460 | 794 | 648 | 669 | 611 | 538 | 581 | 794 | 638 | 771 | 875 | 1,030 | 1,251 | 1,490 | 1,419 | 1,217 | 1,550 |
| 우리나라<br>통보문 | 13  | 9   | 14  | 8   | 21  | 27  | 27  | 19  | 19  | 16  | 19  | 29  | 37    | 33    | 57    | 45    | 47    | 77    |

< 1995년 이후 TBT 통보문 건수 >



### □ WTO TBT 위원회 특정무역현안(Specific Trade Concerns)[건수]

| 연도<br>내용    | 2004 | 2005 | 2006 | 2007 | 2008 | 2009 | 2010 | 2011 | 2012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위원회<br>전체현안 | 27   | 24   | 36   | 46   | 58   | 75   | 61   | 76   | 90   |
| 아국제기<br>건수  | 2    | 1    | 4    | 2    | 7    | 8    | 6    | 10   | 9    |
| 아국대상<br>건수  | 2    | 2    | 2    | 2    | 3    | 4    | 3    | 7    | 8    |

### □ 선진국-개도국 TBT 통보 현황

[단위 : 건(비율)]

| 연도<br>구분 | 1995     | 1996     | 1997     | 1998     | 1999     | 2000       | 2001       | 2002     | 2003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선진국      | 287(79%) | 322(70%) | 567(71%) | 387(60%) | 365(54%) | 370(61%)   | 249(46%)   | 257(44%) | 254(32%)   |
| 개도국      | 77(21%)  | 139(30%) | 232(29%) | 257(40%) | 308(46%) | 238(39%)   | 298(54%)   | 328(56%) | 543(68%)   |
| 연도<br>구분 | 2004     | 2005     | 2006     | 2007     | 2008     | 2009       | 2010       | 2011     | 2012       |
| 선진국      | 230(36%) | 270(35%) | 293(34%) | 358(34%) | 408(32%) | 278(19%)   | 281(20%)   | 262(22%) | 310(20%)   |
| 개도국      | 410(64%) | 492(65%) | 579(66%) | 680(66%) | 851(68%) | 1,217(81%) | 1,147(80%) | 953(78%) | 1,250(80%) |

## □ 해외 무역기술장벽(Technical Barriers to Trade) 현황

- (무역기술장벽) 각국에서 안전, 환경 등을 목적을 실시하고 있으나, 무역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기술규제, 표준, 인증
  - \* (TBT 유형)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제품 차별, 국제표준과 다른 강제 기준, 모호한 인증제도 운영 및 기술기준
- (규제 현황) 무역에 심각한 영향이 있는 기술규제가 매년 1,000여건 이상 통보되고 있어, 각국의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
  - \* '12년 자국 규제가 무역에 심각한 영향이 있어, WTO에 통보한 TBT는 1,560건으로 미국(104건), EU(78건), 중국(76건), 일본(34건)의 TBT(292건)가 전체의 18% 차지
- (문제점) 부당한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해 해당국에 대한 수출 불가, 인증획득 등에 따른 시간, 비용이 증가
  - \* 미국·EU·일본 등의 비관세장벽은 업종에 따라 6~30% 관세율에 상당(Ecorys, 2009)
  - \* 중소기업들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 능력, 인력 부족 등으로 수출국가의 무역기술장벽에 직면하면 대부분 수출을 포기함

## □ 무역기술장벽 대응활동

- 해외 기술규제를 입안 단계에서 입수, 분석한 후 양자(FTA)·다자(WTO/TBT) 협상 등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의 제거 또는 완화
  - \* 미국, EU 등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무역기술장벽 방지를 위한 FTA/TBT 협정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대응 가능
-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된 해외 기술규제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아, 입안단계에서 규제 분석 및 우리 의견 반영이 필요

## □ 기대효과

- 무역기술장벽 해소로 인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,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·비용 감소 등으로 우리 제품의 경쟁력 제고
- 품목별 기술규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기업에 전파하여 기업들이 해외 기술규제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

**미 국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규정 강화 (성공사례)**

- (개요) 미 교통부는 휴대폰 등 휴대용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소형 리튬이온 전지를 항공운송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항공 운송수량 제한, 포장 강화, 보관위치 제한 등의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('10. 1월)
- (예상 피해) 동 규제 시행시 우리 휴대폰 제조업체는 휴대폰 Unit 당 최대 \$3의 운송비 증가 예상 및 신제품 출하 지연 불가피
  - \*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는 소형 전자제품 對미 수출액은 152억불 규모('09년)
  - \* 규제 시행 시 약 3000억원 이상이 운송비로 추가 소요
- (대응 활동) WTO TBT 위원회 이의제기(7회), 양자협약(5회) 등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기준과 일치화, 과도한 규제 철회를 미국에 요구
- 미국은 우리측 의견을 받아들여 완화된 규제안을 발표('12. 4월)
  -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어, 무역기술장벽 해소

**EU 타이어 형식승인 및 연료효율성 라벨링 규정 (성공사례)**

- (개요) EU는 타이어 형식승인 및 연료효율성 라벨링 시행('12.11)을 통보함
  - \* 국내업계의 대EU 타이어 수출량(2011년도) : 8.2억\$
- (예상 피해) 스테드 타이어(스테드 핀을 부착한 겨울철 빙설 노면용 타이어)는 동 규정의 적용예외 대상이나
  - EU 측에서 장거리 운송 중 제품 손상 방지를 위해 핀을 제거한 스테드 타이어에 대해 라벨 부착을 요구
  - \* 스테드 타이어 특성 상 라벨 획득이 쉽지 않아 對EU 수출중단이 우려
- (대응 활동) WTO TBT 위원회('12.3), 한-EU FTA/TBT 위원회('12.4) 이의제기 등을 통해, EU로부터 핀이 제거된 스테드 타이어도 적용예외 대상으로 인정받음 → 무역기술장벽 해소